# 르엘 신반포 센트럴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0.31.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청약 가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한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서초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주택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31.)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0.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청약이 가능하나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 서초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연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단, 제도 적용을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국내 체류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또는 입국일로부터 연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는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자는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둘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소유자는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8조에 의거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 등"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르엘 신반포 센트럴 공급 주택형은 모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적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미발생한 분양권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1. 분양권등부터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전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18.12.11)전 공급계약한 경우 2. 시행일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전 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멸실전 대상 등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2. 분양권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등의 소유가 당첨 이후인 경우는 검토하지 않음(미계약 포함) 등 증여, 경매 등으로 주택을 처분하였음을 확인된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에는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도 청약하실 수 있으나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0.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청약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에 공개합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미분양 물량에 대해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양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위 공급규칙 제2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정하는 해당 분양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급하는 것은 주택법령 위반에 해당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가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할 수 없으며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의 당첨자 –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인천시(일부)·경기도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일부)·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동탄2)·광명시·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수원시 팔달구·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 부산시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광명시·하남시·대구시 수성구·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청약 제한 사항과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주택소유,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 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동일 주택에 대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이 제한됨(가점제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31.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간주되어 우선 공급된 주택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부적격 처리 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권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5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위반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란 일층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제2항에 의거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된 주택(계약취소주택)이 19세대 또는 19호 이하인 경우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2.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다.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로 협의하여 발생 하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 구분 | 일반 1순위(해당)<br>(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 | 일반 1순위(기타)<br>(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시 거주) | 일반 2순위<br>(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시 거주) | 당첨자발표 | 서류제출기간<br>(일반 / 당첨자) | 계약체결 |
|---|---|---|---|---|---|---|
| 일정 | 11월 11일(월요일) | 11월 12일(화요일) | 11월 13일(수요일) | 11월 19일(수요일) | 11월 22일(금요일)<br>~ 11월 28일(목요일) | 12월 2일(월요일)<br>~ 12월 4일(수요일) |
| 방법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개별조회<br>(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 일반공급 : 자격검증 필요서류<br>– 청약신청자격 서류<br>(10:00 ~ 16:00) | 계약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br>(10:00 ~ 16:00) |
| 장소 | ■ 금융결제원 (KB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br>–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br>■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br>–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 | ■ 금융결제원 (일반공급)<br>– PC : www.apt2you.com<br>– 스마트폰 : APT2you 앱 | ■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갤러리)<br>※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9.08.16.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 45398호(2019.10.3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1번지 외 1필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7개동, 총 596세대 중 일반공급 아파트 1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조합원공급 408세대, 임대주택 53세대 제외)
■ 입주시기 : 2022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구분 |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 타입(약식표기)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면적 | 일반분양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 비고 |
|---|---|---|---|---|---|---|---|---|---|---|---|---|---|
| 민영주택 | 2019000891-01 | 01 | 59.9446 | 59 | 59.9446 | 19.3988 | 79.3434 | 47.3991 | 126.7425 | 26.5107 | 13 | 1 | |
| | 2019000891-02 | 02 | 84.3465A | 84A | 84.3465 | 26.1697 | 110.5162 | 66.6941 | 177.2103 | 36.9263 | 8 | 4 | |
| | 2019000891-03 | 03 | 84.1127B | 84B | 84.1127 | 26.6133 | 110.7260 | 66.5093 | 177.2353 | 36.9964 | 68 | 3 | |
| | 2019000891-04 | 04 | 84.9818C | 84C | 84.9818 | 25.3070 | 110.2888 | 67.1964 | 177.4852 | 36.8503 | 46 | 2 | |
| | 합 계 | | | | | | | | | | 135 | 10 |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이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인 2층을 최하층으로 함.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 세대)

| 주택형(타입) | 동(라인) | 층 | 해당세대수 | 대지비 | 건축비 | 합계 | 계약금 1차 계약시(10%) | 계약금 2차 계약후 30일내(10%) | 중도금 1회(10%) 2020-05-15 | 2회(10%) 2020-10-02 | 3회(10%) 2021-02-19 | 4회(10%) 2021-07-09 | 5회(10%) 2021-11-26 | 6회(10%) 2022-04-15 | 잔금(20%) 입주지정일 |
|---|---|---|---|---|---|---|---|---|---|---|---|---|---|---|---|
| 59.9446 59 | 101동(6호) | 2층 | 1 | 841,833 | 252,167 | 1,094,000 | 109,400 | 109,400 | 109,400 | 109,400 | 109,400 | 109,400 | 109,400 | 109,400 | 218,800 |
| | | 3층 | 1 | 898,006 | 268,994 | 1,167,000 | 116,700 | 116,700 | 116,700 | 116,700 | 116,700 | 116,700 | 116,700 | 116,700 | 233,400 |
| | | 10층 이상 | 11 | 944,946 | 283,054 | 1,228,000 | 122,800 | 122,800 | 122,800 | 122,800 | 122,800 | 122,800 | 122,800 | 122,800 | 245,600 |
| 84.3465 84A | 101동(1,2호) 102동(1,2호) | 2층 | 4 | 1,160,406 | 347,594 | 1,508,000 | 150,800 | 150,800 | 150,800 | 150,800 | 150,800 | 150,800 | 150,800 | 150,800 | 301,600 |
| | | 3층 | 4 | 1,198,881 | 359,119 | 1,558,000 | 155,800 | 155,800 | 155,800 | 155,800 | 155,800 | 155,800 | 155,800 | 155,800 | 311,600 |
| 84.1127 84B | 101동(3,4호) 103동(3호) | 2층 | 3 | 1,122,700 | 336,300 | 1,459,000 | 145,900 | 145,900 | 145,900 | 145,900 | 145,900 | 145,900 | 145,900 | 145,900 | 291,800 |
| | | 3층 | 3 | 1,161,945 | 348,055 | 1,510,000 | 151,000 | 151,000 | 151,000 | 151,000 | 151,000 | 151,000 | 151,000 | 151,000 | 302,000 |
| | | 4층 | 3 | 1,201,189 | 359,811 | 1,561,000 | 156,100 | 156,100 | 156,100 | 156,100 | 156,100 | 156,100 | 156,100 | 156,100 | 312,200 |
| | | 5층~9층 | 15 | 1,240,434 | 371,566 | 1,612,000 | 161,200 | 161,200 | 161,200 | 161,200 | 161,200 | 161,200 | 161,200 | 161,200 | 322,400 |
| | | 10층 이상 | 44 | 1,266,597 | 379,403 | 1,646,000 | 164,600 | 164,600 | 164,600 | 164,600 | 164,600 | 164,600 | 164,600 | 164,600 | 329,200 |
| 84.9818 84C | 107동(1,2호) | 2층 | 2 | 1,157,328 | 346,672 | 1,504,000 | 150,400 | 150,400 | 150,400 | 150,400 | 150,400 | 150,400 | 150,400 | 150,400 | 300,800 |
| | | 3층 | 2 | 1,196,572 | 358,428 | 1,555,000 | 155,500 | 155,500 | 155,500 | 155,500 | 155,500 | 155,500 | 155,500 | 155,500 | 311,000 |
| | | 4층 | 2 | 1,235,817 | 370,183 | 1,606,000 | 160,600 | 160,600 | 160,600 | 160,600 | 160,600 | 160,600 | 160,600 | 160,600 | 321,200 |
| | | 5층~9층 | 10 | 1,275,062 | 381,938 | 1,657,000 | 165,700 | 165,700 | 165,700 | 165,700 | 165,700 | 165,700 | 165,700 | 165,700 | 331,400 |
| | | 10층 이상 | 30 | 1,300,455 | 389,545 | 1,690,000 | 169,000 | 169,000 | 169,000 | 169,000 | 169,000 | 169,000 | 169,000 | 169,000 | 338,000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산정하였으며, 주택공급 가격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물 동별, 해당 세대의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로,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할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금의 환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정해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자 당첨인 경우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업주체가 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당첨 부적격자에 대한 업무는 시공사가 대행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동일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의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의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연속 1년 이상(2018.10.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br>• 세대주가 아닌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시 1년 이상)에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 1순위 청약 가능<br>※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 청약전 반드시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br>•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br>•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재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br>•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될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br>•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br>•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다 이상 접수하지 않음)<br>•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 / 추첨제)이 분류됨.<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br>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br>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br>•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예치금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1)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br>•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br>•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한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본 청약에 신청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br>•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br>•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br>•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됨<br>•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 순위 | 신청구분 | | 신청자격 | 거주구분 |
|---|---|---|---|---|
| 1순위 | 85㎡ 이하 | |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추첨제 0%)<br>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br>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br>※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부양가족 산정시에서는 제외됨)<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br>–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시 거주 |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br>–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재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 |
| 2순위 | 전주택형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 |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재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0.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구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85㎡이하 | 100% | 0% |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구분 | 신청자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br>※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 (동 규칙 제2조 제7호의 3)<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br>–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br>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미혼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br>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 ④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호 [별표1의 2호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점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br>–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br>–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br>–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 | |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 부양가족수 | 35점 | 0명(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br>– 가족관계증명서<br>–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br>–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1)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br>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br>※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총 점 | 84점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부동산 신고, 소유권 등기 등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소유로 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그 판명내용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분양권 주택 유무 판단 예시 ... – 청약 시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점이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소명기간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③ 분양주택(시 지분공급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받고 있는 경우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주택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청약전 반드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요망
•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일반공급 청약신청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전 반드시 서울특별시 전입일 확인 요망(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확인 요망) – 본 아파트의 1순위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구분 | 신청대상자 | 거주구분 | 청약신청 접수일 | 청약신청방법 |
|---|---|---|---|---|
| 일반공급 | 1순위(해당) |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br>(2018.10.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2019.11.11.(월요일)<br>(08:00 ~ 17:30) | • 인터넷 청약 원칙<br>•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br>– PC : www.apt2you.com / 모바일 : APT2you앱<br>•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br>– PC : www.kbstar.com / 모바일 : KB스타뱅킹 앱<br>※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br>※ 아래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 | 1순위(기타)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br>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2019.11.12.(화요일)<br>(08:00 ~ 17:30) | |
| | 2순위 | 서울특별시 거주자 /<br>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2019.11.13.(수요일)<br>(08:00 ~ 17:30) | |

※ 견본주택 내에서는 청약접수가 불가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청구 접수시간 : 09:00~16:00) ※ 가점제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적용기준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0.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으로 접수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서울)" 1순위에서 청약 마감 시 더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과 상관없이 당해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통장 신청 시 해당은행에서 청약접수 시간 및 청약신청 및 연계 마감은 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대상 청약요건이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KB국민은행 제외) – 일반공급 |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 |
|---|---|
| • PC 청약시(일반공급)<br>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 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br>• 모바일 청약시(일반공급)<br>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PC 청약시(일반공급)<br>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br>• 모바일 청약시(일반공급)<br>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 17:30은 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은행에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개시일) 기재방법(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서초구) 단위의 전입일 기재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청약시간은 (08:00 ~ 17:30)으로 변경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 구 분 | | 구비사항 |
|---|---|---|
| 일반공급 | 본인 신청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서류는 생략하오니 직접 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br>–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은 해당 국가 본국 공관 확인 공증(서명인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정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신청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내용(단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부적격 당첨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 1순위 / 2순위 청약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방법 |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에서 가점제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가점제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br>–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br>•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br>•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br>•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구모텍지역할 지구인 경우 지역우선공급 없이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br>•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br>•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br>•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일반공급 | 1순위 | • 일시 : 2019.11.19. (화요일)<br>•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2순위 | |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형,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임을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의)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구분 | | 금융결제원(全은행 청약자) |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19.11.19. (화요일) ~ 2019.11.28. (목요일) (10일간) | |
| 인터넷 | | • PC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 → 당첨조회<br>• 모바일 : APT2you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 PC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인터넷청약신청 바로가기(주택청약) → 당첨확인<br>• 모바일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 전화(ARS) | | 서비스 종료 |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 | 제공일시 | 2019.11.19. (화요일)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KB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KB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세대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등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구분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서류제출장소 | 비고 |
|---|---|---|---|
|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br>(일반공급) | 2019.11.22.(금요일) ~ 11.28.(목요일) 7일간<br>10:00 ~ 16:00 | 당사 견본주택<br>(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갤러리)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31)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 구분 | 필수 | 추가(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공통서류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기간 지정하여 발급 |
|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br>–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 | ※ 계약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일반공급 당첨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세대주 성명,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br>–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해당자 필수) | | |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 건물등기부 등본 |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주택 | |
|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주택 |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주택 | |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금융결제원 발급) 등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당첨자(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 | ○ | | 위임장 | 당첨자(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계약 체결 장소에 비치) |
| | ○ |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br>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19.12.02.(월요일) ~ 12.04.(수요일) 3일간<br>10:00 ~ 16:00 | 당사 견본주택<br>(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갤러리)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임이 확인된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취소되며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 등 판정 관련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함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 해당자 | 발급기준 |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
| 본인 계약시 | 신분증 | ○ |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자격검증서류 | | ○ |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인감증명서 | ○ | |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br>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 | 인감도장 | ○ |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br>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 | 계약금입금증 | ○ | |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 | ○ |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 | 위임장 | | ○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대리인 신분증 | | ○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br>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에는 모든 제3자가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 KB국민은행 | 465101-01-277827 |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br>롯데건설(주) |
| 계약금2차 / 중도금 / 잔금 | KB국민은행 | 465101-01-277830 |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br>롯데건설(주)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2차부터는 계약 체결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첨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전체 분양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 직접 납부하여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해서는 입주지 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일정 및 공사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GX룸), 작은도서관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공품목,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 59 | 84A | 84B | 84C |
|---|---|---|---|---|---|
| 발코니 확장 금액 | | 19,000,000 | 22,000,000 | 22,000,000 | 22,000,000 |
| 계약금(10%) | 계약 시 | 1,900,000 | 2,200,000 | 2,200,000 | 2,200,000 |
| 잔금(90%) | 입주지정일 | 17,100,000 | 19,800,000 | 19,800,000 | 19,800,000 |

■ 기타 선택품목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선택1(부분) 설치위치 | 금액 | 선택2(전실) 설치위치 | 금액 | 제조사 |
|---|---|---|---|---|---|
| 59 | 거실+안방 (실내기 2대) | 4,300,000 | 거실+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 6,500,000 | LG전자 |
| 84A | 거실+주방+안방 (실내기 3대) | 5,500,000 |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5대) | 7,500,000 | |
| 84B | 거실++주방+안방 (실내기 3대) | 5,500,000 |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5대) | 7,500,000 | |
| 84C | 거실+주방+안방 (실내기 3대) | 5,500,000 |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5대) | 7,500,000 | |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가전기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제조사 | 적용 주택형 | 금액 | 비고 |
|---|---|---|---|---|
|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형) | LG | 전평형 | 800,000 | BEY3GTBI |
| | 쿠쿠 | | 600,000 | CIHR-D302FB |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 LG | 전평형 | 6,800,000 | S711S24B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LG | 전평형 | 1,700,000 | K221PR14BR/L |
| 전기오븐(고급형) | LG | 전평형 | 550,000 | MZ941CLC |

■ 마감재 가구 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 적용 주택형 | 금액 | 비고 |
|---|---|---|---|---|
| 현관 | 3연동 중문 | 84A/84B/84C | 1,600,000 | |
| 바닥 | 전실 원목마루 | 59 | 4,000,000 | |
| | | 84A/84B/84C | 6,000,000 | |
| 주방 | 수입 주방가구(외산씽크볼포함) | 59 | 16,000,000 | |
| | | 84A/84B/84C | 18,000,000 | |
| |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 59 | 1,100,000 | |
| | | 84A/84B/84C | 2,000,000 | |
| | 식탁 펜던트 | 59 | 650,000 | |
| | | 84A/84B/84C | 900,000 | |
| 침실 | 안방 붙박이장 | 84A/84B/84C | 3,600,000 | TV형 / 수납형 중 선택 |
| | 안방 대형드레스룸 | 84C | 4,000,000 | 안방 붙박이장 선택시 선택불가 |
| | 침실2 패밀리룸 | 84A | 4,600,000 | |
| | | 84B | 4,800,000 | |
| | | 84C | 3,400,000 | |
| | 침실2 붙박이장 | 59/84A/84B/84C | 1,100,000 | 패밀리룸 선택시 선택불가 |
| 욕실 | 스타일업 패키지 | 59/84A/84B/84C | 3,500,000 | 욕실 2개소 |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 추가 선택 가전제품의 경우, 용량, 효율, 에너지 등급 등의 기기의 성능 면에서 입주 시점의 최신제품에 비하여 사양, 사용성 등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 KB국민은행 | 465101-01-277702 | 롯데건설(주) |
| 잔금 | KB국민은행 | 465101-01-277715 | 롯데건설(주) |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마감 위치 및 두께, 몰딩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공동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편의상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 및 계약 등에 관하여 사업주체가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

■ 마감재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일부 마감재는 본공사 시 시공업체 입찰결과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호 색상 및 디자인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홍보물
• 견본주택은 분양주택 일정기간 공개 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84B㎡타입이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조감도 및 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 • 견본주택에 설치된 현관문을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만든 것으로 실제 시공제품과 무관합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구분 | | 설계공지내용 |
|---|---|---|
| 공통 | 도로 및 기반시설 | 당 현장의 구역내에는 시설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기부채납 부지로 단지 내 소유 녹지가 아니며, 실제 시공시 인접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물 종류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달로그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br>단지 주변 도로는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제 시공시 인접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 ... 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차로 확장 및 분양 이후, 계획변경인가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 도로 및 보도, 및 패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br>입주 후 인접단지의 개발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주변에 지하철 및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교통, 매연 영향이 발생할수 있음. |
| | 휀스설치 | 보행 및 차량출입구, 어린이집 및 경로당 전면을 제외한 단지 외곽 경계에 생울타리를 설치 예정이나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단지 차량출입구 외 출입구에는 별도의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
| | 인허가 | 당 사업장은 2005년 12월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등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당 사업장은 사업주체인 조합과 협의하여 향후 건축심의 등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외관 디자인 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관 변경 동의서를 받을 예정임, 인허가 과정 중 건축물의 외관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
| | 분양홍보물 (모형, 카탈로그, 각종 광고지)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단지 |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여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br>주동의 형태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하여 인접 세대에 소음, 일조 및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br>주동의 외관 색채, 특화 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단지 주/부출입구 문주 형태 및 마감재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심의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달라질 수 있음.<br>주동의 동출입구, 저층부7개층 높이(필로티 포함된 층수임)는 지정석재 마감임. 단, 외관 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진행시 석재 적용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br>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단지 주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br>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서 일부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이 불편할 수 있음.<br>저층부 세대는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br>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인명대피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단지 | 공동사항 |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어 공용부전력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며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그로인해 옥상부에는 별도의 조경시설이 없음.<br>인허가절차상의 각 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br>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특히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3동과 105동 사이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는 바닥분수 등 시설이용자가 직접 물에 접촉하는 수경시설은 일정한 주기의 수질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br>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br>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br>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br>각동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동출입구 동선이 불편할 수 있음,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br>단지1층에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각 동 진입부 근처에 설치될 예정임,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인허가 도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가 상이함. 각 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인해 근처 저층세대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107동 지하에 음식물 쓰레기집하장 및 이송설비 기계실이 위치하며 이에 따른 영향 및 불편이 있을 수 있음.<br>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br>단지 내 소방안전매트가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에 제한이 있어 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및 주변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될 수 있음.<br>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정,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br>계단실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는 자동배연창치가 설치됨.<br>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 | 필로티 | 모든 동별 1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의 필로티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
| | 단지출입구 | 당 단지에 총 4개소의 단지출입구(101동과 102동 사이의 차량 및 비상차량 출입구, 105동과 107동 사이의 차량 및 비상차량 출입구, 101동과 103동 사이의 보행출입구, 102동과 104동 사이의 인접단지 연결출입구)가 있으며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일부 위치 및 형태 및 개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101,102동과 103,104동 사이의 보행통로는 반포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준하여 설치된 단지내 녹도로 출입구에는 별도의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수 있음. |
| | 아파트 주동 | 101동 남측의 어린이집 상부에는 옥상정원이 조성되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102동 남측의 경로당 옥상은 초화 식재를 통해 녹화될 예정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공간임. 다만 녹화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br>101동과 102동 사이 및 107동 하부에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인한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br>102동 남측에는 경로당과 옥상정원이 조성되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br>101동과 102동 전면에 경로당 어린이집 및 대형 문주구조물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시야 및 채광 간섭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br>101동과 103동 사이, 103동과 105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며, 104동과 106동 사이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br>103동 옥상으로 정화조배기덕트가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br>103동과 105동 사이, 101동과 102동 사이, 107동 측면 및 전면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이 조성되며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수경시설의 종류 및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음.<br>104동과 106동 사이에 선큰가든과 지하주차장 보행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인한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침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br>105동 북측에는 차량의 회차 공간 및 버스 승하차 대기장소인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되며, 101동 남측에 주정차 공간 및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br>105동 옥상층에 소방용 고가수조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br>107동 전면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br>107동 하부로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차량출입으로 인해 107동에 일부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br>각 주동 인근에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br>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코어별로 상이하며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히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br>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br>동 하부 지하1층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휀룸 급기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이동될수 있음. 각동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환기구, 주차장 급배기구 등 주동 및 주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 | 지하 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2층까지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3층은 기전실, 저수조, 104동 및 106동의 지하1층 다른 세대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주차공간이 설치되지 않음.<br>각 주동하부에 세대당 1개소의 세대창고가 적용되며, 각 세대의 세대창고 위치는 지하 2개층으로 분산되어 입주시 배정되며 배정으로 인한 각세대에서 세대창고간의 이동거리로 인한 불편이 생길 수 있음. 본공사 시 세대창고 내 선반이 설치되고, 창고의 외부는 벽에서 내부가 보이는 철망으로 계획되어 있음. 또한 지하층을 활용하여 설치되므로, 결로 습기 등에 취약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세대창고의 위치, 시공디테일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창고가 설치되는 지하층 공간은 별도의 천정마감이 설치되지 않아 지하층에 필요한 천정 배관 등이 노출되어 보일 수 있음.<br>당 사업장의 지하주차장 1층에 무인택배차량 및 재활용 분리수거차량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차량의 출입 및 이동이 있을 예정이며 그로 인해 지하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br>지하주차장은 단지 남측 및 동측 출입구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동별 주차거리가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주출입구의 진입 및 진출 차선의 형태 및 개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br>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처 저층부 세대는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동위치와 형태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음.<br>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br>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무인택배공간, 재활용 분리수거장, 세대창고 공간,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br>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3M~2.4M, 확장주차 폭 2.5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축소될 수 있음.<br>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빗물저수조/정화조/음식물 쓰레기수거장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주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 | 부대시설 |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외부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br>당 사업장은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음.<br>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구조, 규모,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br>커뮤니티센터(관리사무소,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샤워/탈의실, 독서실, 주민카페, 세탁물수거실 등)가 104동과 106동 하부 지하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br>경로당은 102동 남측에 별동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br>어린이집은 101동 남측에 별동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br>작은도서관은 101동 지상 28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작은도서관 전용 엘리베이터 및 전용홀이 101동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101동 세대전용 엘리베이터 홀과는 연결되지 않음. 단, 2~3층과의 28층의 엘리베이터홀과 비상 통로가 계획되어 있음. 작은도서관 전용 엘리베이터 작동으로인해 101동 입주민들은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br>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공용부 집기, 비품류, 책상, 의자, 가구 및 가전류 등은 미제공)<br>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소모성 도구 및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br>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에는 실외기 설치공간이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보도 및 조경공간,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편가동에 따른 바람 등이 전달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br>105동 남측과 105동 북측 차량 출입구 인근 차량 대기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맘스스테이션(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설치됨,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 |
| | 부대시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 | 무인택배함 | 103동 하부 지하3층에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우수저류조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 공급시설 | 103동 전면부 또는 내외부에 한전인입 TR박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한전과 협의후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한전, 지역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기타사항 | 경비실은 2개소가 분산 설치되어 있으며, 동측 차량출입구, 남측 차량출입구와 연계하여 설치됨, 경비실과 주차차단기의 위치 및 규모, 개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 구분 | | 내용 |
|---|---|---|
| 단위세대 | 공통사항 |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br>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일부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가십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산정한 기본형 평면의 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공급의 설계도서에 적시한 마감면 벽체비름즘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br>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br>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br>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br>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br>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br>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br>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당사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음.<br>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 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과 상이할 수 있음.<br>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내공치수 및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br>당 단지는 리모델링 가능 구조로 계획되어 세대내부가 기둥과 경량벽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세대간 벽체가 비내력벽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추후 세대간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또한 기둥으로 인하여 일부 가구 배치 등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br>54㎡, 59㎡ 타입의 경우 실외기실 내부의 세대간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대피공간 대체역할의 피난 통로로 비상시 파괴하여 대피할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간 벽체가 경량벽체로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추후 세대간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br>안방 앞 발코니,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확장을 선택 하여도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정마감이 없음. 다만, 일부세대(59㎡, 84A㎡, 84B㎡, 97㎡, 121㎡) 세대환기용 기계식환기장치가 다용도실 천정에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장치를 가리기 위한 천정 마감으로 인해 반자높이가 다른 타입에 비해 낮고, 천정 부위별 그 높이 또한 상이 할 수 있음. (그 외 타입은 세대환기 장치가 실외기실 천정에 설치됨)<br>84A,B,C 타입 3~20층 일부세대의 거실 또는 침실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며 하부턱 포함 높이 1800mm 난간이 설치됨. (모델하우스 설치 타입과 발코니설치 유무 및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개방형 발코니는 확장을 할 수 없는 외부공간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우수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개방형 발코니 설치 위치에 따라 하부 세대는 채광 및 시야에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방형 발코니에는 배수드레인이 설치될 수 있음. 개방형 발코니 설치 위치 및 설치유무는 동별 세대별 층별로 상이하므로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 | 제공품목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내 모형, 인쇄물 및 카탈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람.<br>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여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br>임대세대 및 조합세대의 경우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제공품목 및 마감재가 일반분양세대와 상이한 부분이 있음.<br>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br>발코니 확장형 선택시 거실아트월은 대형아트월타일(600*1200)로 시공됩니다.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아트월타일(400*800)이 시공되며 선택 유무에 따라 타일 디자인, 색상, 원산지, 타일나누기가 상이함.<br>84㎡, 84B㎡ 타입의 복도아트월 대형타일은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 제공되고, 비확장시 해당부분은 벽지로 시공됩니다. 또한 각 타입별 위치가 상이함.<br>확장 미선택 세대의 경우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 상판(MMA)이 시공되며 주방벽 악세서리가 확장시와 상이하게 적용되며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함.<br>다용도실 싱크 및 하부장은 일부타입(84A㎡, 84B㎡, 84C㎡)의 발코니 확장형 선택세대에만 제공되며, 기본제공품목인 2단세탁선반은 공통 제공되지 않음. |
| | 가구공사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정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br>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아일랜드 식탁 포함).<br>가구의 전기,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br>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br>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장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br>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음.<br>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한 알루미늄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br>다용도실 손빨래용 보조싱크하부장은 공간의 쓰임새를 감안하여 별도의 걸레받이 없이 설치됩니다. 특히, 목재소재의 특성상 물청소 및 물사용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 | 창호공사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사양은 인허가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장시 제공되는 이중창호의 프레임은 외측면에 불소수지도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견본주택의 경우 외부창호 프레임에 도장 유사색상의 시트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본공사 재질의 차이에 따라 다소 달라보일 수 있음.<br>견본주택에 시공된 내/외부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br>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br>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br>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하며, 루버와부에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됨.<br>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안방, 침실의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이중창이 설치되며,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한쪽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다른한쪽은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 불가능합니다. 유리난간 적용으로 인해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br>비확장형(기본형) 단위세대는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금속재 철재난간이 설치되며 외부입면이 확장형 단위세대와 상이함.<br>세대 내 대피공간의 출입도어는 법규에 따라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도어클로저가 설치될 예정임.<br>세대 내 현관방화문, 대피공간의 방화문, 실외기실의 철재도어의 디자인, 강판의 재질, 부속품의 형태 및 기능, 경첩의 개수 등은 추후 실 시공시 동등이상으로 변경/교체될 수 있음.<br>59㎡ 타입의 주방 이중창호는 투시형 철재난간이 일부 설치됨.<br>84㎡ 타입 거실 측면에 개방형 발코니 계획이 없는 타입의 경우 침실과 동일한 높이의 이중창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의 높이가 안전상의 이유로 거실보다 높게 설치됨.<br>개방형 발코니용 난간대는 일부 높이, 설치 디테일등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br>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 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 | 전기/설비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수전, 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 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br>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br>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br>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 차이(욕실 내 천정점검구 및 환기위치 등)에 의해 마감재 분할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음.<br>세대 내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기기위치는 각 타입별, 발코니 확장유무에 따라 위치가 상이하며, 임의적으로 위치를 변경하실 수 없음. (전타입 발코니 비확장형 및 59㎡ 확장형의 경우 실내(주방가구 내)에 위치하며, 84A㎡, 84B㎡, 84C㎡ 확장형에서는 보조주방에 위치함)<br>또한, 해당설비위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br>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임.<br>세대욕실 오배수배관은 층상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유지보수 방식이 층하배관 방식과 상이함.<br>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br>SKT 스마트홈 IOT서비스는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됨(음성인식스피커 별도 구매)<br>스마트홈 IOT연동 가전제품은 SKT와 협약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br>욕실 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br>세대환기용 환기장비가 안방발코니 주방발코니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장비를 가리기 위한 천정 마감으로 인해 반자높이가 낮아 질 수 있음. |
| | 발코니 및 실외기실 |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 발코니의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br>다용도실 세탁기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는 세탁기/건조기 사용성 증진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br>세탁기/건조기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다용도실내 시스템선반의 설치 위치는 실시 공시 견본주택, 카달로그, 분양홍보물(모형, CG)과 상이할 수 있음.<br>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단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 주의사항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②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④ 발코니 측외벽에 따라 창호의 폭이나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⑤ 세대 내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⑧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됨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현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약 후 민원이나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재 계획된 시설은 존치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추가시설의 설치 및 현재시설의 수리 등은 요청할 수 없음

## 기타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단위 : 원)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92019-101-0007800호 | ₩171,861,600,000<br>(일천칠백일십팔억육천일백육십만원정)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인해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감리회사 | 감리 금액 | 비 고 |
|---|---|---|---|
| 건축감리 |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 3,086,204,000원 | |
| 전기감리 | ㈜동우이앤씨 | 514,272,270원 | |
| 소방/통신 감리 | 세종종합기술주식회사 | 352,000,000원 |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사업주체명 | 시공회사명 |
|---|---|
|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br>(법인등록번호 : 110271-0010178) | 롯데건설 주식회사<br>(법인등록번호 : 110111-0014764) |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갤러리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사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반드시 사전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하시기 바라며, 미예약 방문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1811-8448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시행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
시공 LOTTE E&C

1811-8448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갤러리